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27호서식] <개정 2026. 6. 11.>

http://cyber.kgs.or.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특정설비 [ ] 신규검사 / [ ] 재검사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7일

※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됩니다.

신 청 인	상호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
	사무소 소재지	전화번호
	전자우편주소(e-mail)	
	사업자등록번호	

신청내용	수입검토서 발급번호				
	설계단계검사 합격증번호				
	특정설비 종류	규격		수량·용량	단위
	[ ] 저장탱크	[ ] 가로형 [ ] 입형 [ ] 구형 [ ] 평저형	[ ] 상온 [ ] 저온 [ ] 초저온		L
	[ ] 소형저장탱크				L
	[ ] 차량에 고정된 탱크				L
	[ ] 압력용기	[ ] 탑류 [ ] 드럼류 [ ] 열교환기 [ ] 반응기 [ ] 기타	[ ] 상온 [ ] 저온 [ ] 초저온		L
	[ ] 기화장치				Nm³/h
	[ ] 독성가스배관용밸브				A
	[ ] 긴급차단장치				A
	[ ] 안전밸브				A
	[ ] 자동차용 가스주입기				
	[ ] 역화방지장치				A
	[ ] 냉동용 특정설비	[ ] 압축기 [ ] 응축기 [ ] 증발기 [ ] 압력용기류			톤 또는 L
	[ ]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넷				L
	[ ]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				Nm³/h
	[ ]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잔류가스 회수장치				L
	[ ] 그 밖의 설비				
	검사 희망일				
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설비 [ ] 신규검사 [ ] 재검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
검사기관의 장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)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3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금액

처리절차	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	
신 청 인	처 리 기 관 한국가스안전공사(검사기관)
신 청 →	접 수 ▼ 현지검사 ▼ 각인 또는 표시